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 .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도심·주거지 인근에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유보관시설의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련 시설을 추가하고 그에 맞는 내화성능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실증사업 추진에 맞춰 버티포트를 용도 신설하여 신산업 축진을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장애인용 승강기 시설은 건축물의 층수·높이 산정 시 제외토록 하고, 건축물이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해 현행 법령에 부적합하더라도 현행 법령에 적합한 부분을 대수선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규모를 상향하여 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70명”을 “80명”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를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려”로 한다.

제61조제1항제2호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을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학원·독서실·당구장·다중생활시설·공유보관시설”로 한다.

제109조제1항 중 “제13조, 제2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으로서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 및 본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19조제1항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은 층수 및 본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별표 1 제4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공유보관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1 제8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1 제8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버티포트

별표 1 제18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공유보관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보관시설 용도분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제4호·제8호·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

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제3조(기존 공유보관시설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 및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증을 위해 규제특례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별표 1 제4호 및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볼 수 있다.

제4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

고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② (생략) 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 ⑥ (생략)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80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생략)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생략)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 7. (생략) ③ (생략)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현행과 같음) 2.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 3.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 ----- ----- -----

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단서 신설>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
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으로서 높이가 1
2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
축물의 높이 및 본문에 따
른 수평투영면적에 산입하
지 않는다.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9. _____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단서 신설>

--.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
 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
 강장을 포함한다)은 층수 및
 본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에

10. (생략) ② ~ ⑤ (생략)	<u>산입하지 않는다.</u>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락처	(044) 201 - 3763